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 규칙」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1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- 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- 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 - 가. 제출기한 : 2023년 11월 25일까지
 - 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 - 다. 제출내용
 - 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 - 2) 성명/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 - 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 - 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
 - 2) 전화번호 : 031-390-8755, FAX 031-392-4004
 - 3) 전자우편 : gim72@korea.kr
- 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 - 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	7-1	HJ T
	찬성	반대	의 견	선	비고

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이혜승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

발의연월일 : 2023. 11.

발 의 자:이혜승,이길호,신경원
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 이훈미, 이동한, 박상현

1. 제안이유

O 채식을 통해 군포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 하여 동물권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다. 채식 교육·홍보 등(안 제6조)
- 라. 채식 음식점 인증(제 8조)

3. 관련법령

O 해당없음

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며, 동물권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채식(菜食)"이란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, 과일,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만 먹는 식사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군포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군포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- 제4조(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.
 - 1.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
 - 2.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
 - 3.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
 - 4.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 - 5.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

- 6. 그 밖에 시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.
- 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·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채식 교육·홍보 등) 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있다.
 - ② 시장은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.
- 제7조(채식의 날 운영) ① 시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,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 록 권장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할 수 있다.
- 제8조(채식 음식점 인증) ①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채식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

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채식 음식점의 정의, 인증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9조(채식생활 실천 지원)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